

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19. 04. 29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업) 경동대학교(이하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도시재생지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도시재생사업 신규 발굴 및 지원
2.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 수주
3. 도시재생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
4.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
5. 도시재생 관련 위탁·연구·용역 사업 운영
6. 그 밖에 총장이 지시한 사항 및 센터에 필요한 업무

제3조 (조직) 도시재생 활성화 및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별 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 (센터장)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교원·직원 중에서 본 대학교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이사장(이하“이사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본 대학교 내 캠퍼스별로 둘 수 있으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직원)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노력)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 및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중앙정부 보조금, 지방자치단체 보조금, 본교자체 지원금, 용역수입

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9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